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낚시터업 안전관리 등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내 용

「낚시관리 및 육성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산업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5개 시·군에서는 [표1]과 같이 낚시터업 및 유어장을 허가·또는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1] 낚시터업 및 유어장 현황

| 구분  | 합계  |       | 낙시터업 |       | 유어장(가두리 낙시) |       |
|-----|-----|-------|------|-------|-------------|-------|
|     | 사업장 | 수용인원  | 사업장  | 수용인원  | 사업장         | 수용인원  |
| 합계  | 80  | 4,800 | 67   | 3,542 | 13          | 1,258 |
| 태안군 | 42  | 1,618 | 42   | 1,618 | -           | -     |
| 서산시 | 13  | 1,288 | 1    | 110   | 12          | 1,178 |
| 당진시 | 21  | 1,544 | 21   | 1,544 | -           | -     |
| 홍성군 | 2   | 170   | 2    | 170   | -           | -     |
| 보령시 | 2   | 180   | 1    | 100   | 1           | 80    |

※ 충청남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 1. 낙시터업 및 유어장 시설 및 장비기준 관리 미흡

「낙시관리 및 육성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만 허가할 수 있고,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의하면 [붙임]과 같이 시설 및 장비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낙시터업 및 유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과 해당 시·군은 낙시인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낙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근거하여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낙시터업 67개소 및 유어장업 13개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 출장 조사<sup>1)</sup>한 결과 낙시터업 현장에서 [표2]와 같이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낚시터업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2] 낚시터업 위반사항 적발현황

| 시군         | 위반업체별            | 위반사항                                      |                               | 조치(예정)사항                                 |
|------------|------------------|-------------------------------------------|-------------------------------|------------------------------------------|
|            |                  | 위반법 조<br>(낚시관리및육성법)                       | 위반내용                          |                                          |
| 합계         | 14개소             |                                           |                               |                                          |
| 당진<br>(3)  | ○○○○○○<br>좌대낚시   | 제11조 제1항 제1호                              | 핸드레일 기준 미달                    | 행정처분예정<br>(영업정지 1개월)                     |
|            | ○○○○○○○○<br>좌대낚시 | 제11조 제1항 제1호                              | 핸드레일 및 구멍줄 기준 미달              | 행정처분예정<br>(영업정지 1개월)                     |
|            | ○○○○○ 좌대낚시       | 제11조 제1항 제1호                              | 핸드레일 및 구멍줄 기준 미달              | 행정처분예정<br>(영업정지 1개월)                     |
| 태안<br>(14) | ○○낚시터            | 제53조 제1항 제2호<br>제14조 제1항 제5호,<br>제10조 제1항 | 최대 수용인원 초과                    | 행정처분<br>(영업정지 1개월),<br>사법처분 예정<br>(○○○○)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제53조 제1항 제2호<br>제10조 제1항                  | 무허가영업                         | 사법처분 예정<br>(○○○○)                        |
|            | ○○○○○○○낚시터       | 제14조 제1항 제5호,<br>제11조 제1항 제1호             | 구멍조끼 기준 수량 부족                 | 행정처분 예정<br>(영업정지 1개월)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 구멍조끼 수량 부족, 구멍부환·<br>소화기 미 비치 |                                          |
|            | ○○○○○            |                                           | 핸드레일, 비상전기 설비 미 구비            |                                          |
|            | ○○○○○낚시터         |                                           | 구멍조끼 수량 부족                    |                                          |
|            | ○○○○○낚시터         |                                           |                               |                                          |
|            | ○○○○○낚시터         |                                           |                               |                                          |

## 2. 낚시인 안전관리지침 미제정

「낚시관리 및 육성 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시

1) 태안시의 경우 ○○○○경찰서에서 점검 후 태안시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함

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사항 등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해양경찰 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등 낚시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보령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홍성군수, 태안군수**

**[시정]**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낚시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조치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지 아니한 시장·군수는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